

## 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제31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 부 산 광 역 시 장

1. 건 명 : 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669명(1,606건, 붙임 참조)

4. 공고 기간 : 2026. 1. 22.(목) ~ 2. 4.(수)

#### 5. 의견제출 안내

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로 **2026.9.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반드시 접수여부 전화 확인 필요

- 우편 제출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001, 부산시청 22층 탄소중립정책과(대기관리팀)

- FAX 제출 : 051-888-3569 (이메일: kej1223@korea.kr)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 대기관리팀(☎ 051-888-3588, 35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 1부

2.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